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449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진

담당변호사 한주현

변 론 종 결 2024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에게 4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, C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는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(갑 제1호증)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, 원고는 피고가 위 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화연